**The Law on Sex in UK**

**옮긴 이: 이불쟁이(DSO)**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 이 글은 출처를 명시하는 한 복제·배포·공중송신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 전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섹스에 합의하는 나이**

**- 잉글랜드, 웨일즈**

어떤 종류의 성적 행위라도 합의할 수 있는 나이는 남성, 여성 모두 16세이다. 승낙연령(the age of consent)은 젠더 혹은 성적 지향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며 두 사람의 성행위가 서로 다른 젠더 간에 일어난 것이라도 상관 없다.

16세 미만의 사람과 하는 그 어떤 성적 행위도 모두 범죄이다. 그러나 내무성은 지침을 통해 16세 미만의 사람이 모두 동의했으며 서로 비슷한 또래일 경우 10대를 기소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

18세 이상의 사람이 18세 미만의 사람과 하는 그 어떤 종류의 성적 행위도 모두 불법이며 만약 둘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책임 있는 지위(position of trust)에 있다면(예를 들어 교사 혹은 사회 복지사) 성적 행위는 곧 책임자의 학대가 된다.

2003년의 성범죄법에 따라 어떤 종류의 성적 행위에도 합법적인 합의를 표할 수 없는 12세 이하의 아동에게는 특별한 법적 보호가 제공된다. 강간, 삽입을 통한 폭행, 아동을 성행위에 참여하게 하거나 조장하는 것의 최대 형량은 종신형이다.

**- 스코틀랜드**

모든 성적 행위에 대한 승낙연령은 남녀 상관없이 모두 16세이다. 따라서 성인과 16세 미만의 사람이 그 어떤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은 범죄이다. 승낙연령은 젠더 혹은 성적 지향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다.

만약 성적 행위에 삽입 혹은 구강 섹스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변호가 가능하기는 하다. 둘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의 나이를 16세 혹은 그 이상이라고 믿었고 그들이 비슷한 범죄로 이전에 기소된 적이 없거나, 둘의 나이 차이가 2살 미만이라면 가능한 부분이다.

13-15세의 사람들 사이의 삽입행위(질, 항문)와 구강 섹스는 서로 동의했다 해도 범죄이다. 한 가지 변호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둘 중 한 명이 다른 이가 16세 이상이라고 믿었을 경우이다.

스코틀랜드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16세 미만인 사람의 성적 행위와 관련된 사건이 모두 아동 보호와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아마 여전히 성적 발달과 관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13세 미만의 아동들은 어떤 종류의 성적 행위에도 합법적인 합의를 표할 수 없는 나이이기에 특정한 위법행위의 범위 안에서 보호받는다. 강간, 성폭행, 삽입을 통한 성적 폭행, 어린 아동을 성적 행위에 참여시킨 경우 최대 형량은 종신형이다. 피의자가 아동이 나이가 많았다고 믿었다 해도 변명이 될 수 없다.

**- 북아일랜드**

모든 성적 행위에 대한 승낙연령은 남녀 상관없이 모두 16세이다. 승낙연령은 젠더 혹은 성적 지향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다.

2008년의 (북아일랜드) 성범죄령을 통해 16세 미만의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법들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해당 법은 행위에 학대 혹은 착취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나이가 비슷한 두 10대 사이의 상호 합의된 성적 행위를 기소할 의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13세 미만의 아동들은 어떤 종류의 성적 행위에도 합법적인 합의를 표할 수 없는 나이이기에 특정한 위법행위의 범위 안에서 보호받는다. 강간과 삽입에 의한 폭행의 최대 형량은 종신형이다. 아동의 실제 나이가 13-15세의 경우, 아동의 나이를 착각했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2008년의 (북아일랜드) 성범죄령 79조는 20조 하의 범죄 행위 수행과 관련하여 정보 보고의 의무를 배제하기 위해 1967년의 (북아일랜드) 형사법의 5(1)항 “관련 범죄”(relevant offence)를 수정했다. 따라서 형사법상 성범죄령 16-19조에 따라 성행위를 한 사람 둘 중 한 명이 18세 미만일 때, 16세 미만의 아동이 관련된 성적 행위 사건을 경찰에 보고해야 한다는 법에 명시된 의무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성범죄령 12-15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은 의무 배제는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부, 사회 복지부, 공공 안전부에서는 변호사들,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아동 보호 절차와 관련한 법의 영향을 알리기 위해 각각 지침을 발표했다. 지역 아동 보호 정책과 절차에도 관심이 쏠렸다.

**강간**

영국 내에서 만약 한 남자가 의도적으로 본인의 성기를 타인(남성 혹은 여성)의 합의 없이 질, 입, 혹은 항문에 의도적으로 삽입할 경우 혹은 그 대상이 13세 미만인 경우(12세 이하의 사람은 모든 성적 행위에 법적으로 합의를 표시할 수 없기에) 그는 강간을 범한 것이 된다.

남자만 행할 수 있는 특정 성범죄도 있다. 여성은 음경 삽입으로 정의되는 강간범죄를 행할 수 없지만 합의 없이 성행위, 성적 강제 혹은 폭행, 혹은 삽입에 의한 폭행에 타인을 참여시킬 경우에는 기소 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범죄들은 영국 내 모든 나라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삽입에 의한 성폭행**

해당 범죄는 2003년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성범죄법, 2008년 (북아일랜드의) 성범죄령, 2009년 (스코틀랜드의) 성범죄법에서 등장했다. 이는 타인의 합의 없이 질 혹은 항문에 신체 부위 혹은 그 어떤 것이라도 삽입한 남성 혹은 여성에 대한 범죄이다. 이 경우, 그 의도가 성적이어야 한다.

**성폭행과 성추행**

영국과 웨일즈에서는 타인의 합의 없이, 혹은 범죄를 저지른 이가 타인이 합의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믿지 않았지만 성적인 의도로 접촉할 경우 범죄가 된다.

북아일랜드에서 타인이 합의했다는 합리적인 믿음 없이 의도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했다면 그것은 성폭행이다. 이 때 접촉은 신체의 어떤 부위를 무엇으로 만졌든 간에 신체적인 것이거나, 혹은 옷 위를 만졌다 하더라도 성립된다.

스코틀랜드에서 ‘성적 접촉’과 연관하여 성폭행의 범위는 유사한데, 질, 항문 혹은 입에 성적인 삽입을 하는 것이 추가된다. 누군가에게 사정(ejaculating)하거나, 침을 뱉거나 소변을 보는 행위도 포함된다. 삽입이라는 부분 때문에 강간과 성폭행은 겹칠 때가 있다. 스코틀랜드에는 보다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한 폭행에 대한 관습법도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북아일랜드에서 여성에 대한 성추행은 폭행에 대한 관습법으로 다루어지는 반면, 남성에 대한 성추행은 2003년 (북아일랜드의) 형사 정책령에서 등장한다. 음란(indecent)의 정의는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여성의 성적 정숙함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행위를 하는 것’,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음란하다고 생각하는 지’, ‘정숙과 사생활에 대한 현재의 기준을 지나치게 위반한다면 음란한 것’이다.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이는 반드시 폭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루밍(Grooming)**

**- 잉글랜드, 웨일즈**

아동을 학대할 의도를 가지고 인터넷 혹은 다른 온라인 매체를 통해 아동과 친해지려 하고 아동을 만나거나 만나고자 하는 경우 이것은 범죄이다. 성적 위해령(Risk of Sexual Harm Order)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과 성적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이 부적절한 성적 행위에 참여하는 성인을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만약 누군가가 16세 미만의 어린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다고 생각할 경우 이와 같은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 북아일랜드**

2008년 (북아일랜드의) 성범죄령은 성적 그루밍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18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과 두 번 이상 만나거나 소통하고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만나려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는 범죄자이다.

**- 스코틀랜드**

그루밍 범죄는 2005년 아동 보호와 성범죄 방지법에서 등장했다. 그루밍은 16세 미만의 어린 사람의 신뢰를 얻어 성적으로 폭행 당할 때 취약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을 말한다. 성적 피해 위험령(Risk of Sexual Harm Order)에 따라 특정 아동 혹은 일반적인 아동들에게 성적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법정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

**포르노그라피와 아동 학대 이미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는 ‘포르노그라피’라는 용어에 기준이 될 만한 법적 정의가 없다. 그러나 공공기소국에서 발행한 법적 지침에 따르면 오직 혹은 주로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이미지는 포르노그라피적인 것이 된다. 포르노그라피는 출연하는 대상이 18세 이상이거나 극도로 포르노그라피적 이미지로 정의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 한 합법이다.

판사 혹은 배심원은 이미지가 포르노그라피적인지 아닌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의) 형사 정책과 2008년의 이민법은 극도로 포르노그라피적인 이미지를 소유하는 것을 범죄로 정의한다. 해당 법에서 말하는 극단적인 이미지란 ‘극도로 모욕적이며 역겹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음란한 인물의 이미지’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을 노골적이고 실제적으로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a)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

(b) 한 사람의 항문, 가슴 혹은 생식기에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

© 시신에 대한 모든 성적 행위 혹은 폭행

(d) 사람과 동물 간의 모든 성적 행위

스코틀랜드에서는 형사 정책과 2010년 (스코틀랜드의) 허가법에서 극단적인 포르노그라피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해당 정의는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와 유사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위협하는 행위” 그리고 “강간 혹은 합의하지 않은, 삽입이 포함된 행위”가 추가되었다.

해당 법에서 다루는 범위는 움직이거나 정지한 이미지이다.

2014년의 시청각 매체 서비스 규제는 주문형 비디오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영국에서 제작되고 배포되는 포르노그라피에 대해 다루는 새로운 법을 도입했다. 이와 같은 유형의 포르노그라피는 영국 영화 등급 분류 위원회의 18세 미만 시청 금지 등급 인증에 충족되는 소재를 보여주는 것이 해당된다. 해당 소재가 18세 미만 시청 금지 등급을 받거나 받을 것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거나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배포 가능하다.

1978년 아동 보호법과 1988년 형사 정책법은 아동 음란물을 촬영하고, 촬영하도록 허가하고, 소유하고, 보여주고, 배포하거나 출판한 모든 이들을 범죄자로 규정한다. 해당 법에서 말하는 아동은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